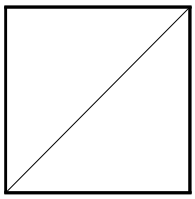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99 호
의 결 연 월 일	2026. 4. 8. (제 7 차)

의결사항

에스앤씨엔진그룹리미티드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4. 8.

1. 의결주문

에스앤씨엔진그룹리미티드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에스앤씨엔진그룹리미티드(이하 '회사')의 공시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조사기간 : '25.12.18. ~ '26.3.20.)한 결과, 발견된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증권발행제한 : 에스앤씨엔진그룹리미티드 [前코스닥 상장법인] 6월

4. 참고사항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하는 사항임

가. 관계법규 : <붙임 1>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 제160조, 제164조 제2항 제1호, 제16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5조 제1호, 제176조 제2항

나. 에스앤씨엔진그룹리미티드에 대한 증권발행제한 조치 산정내역 : <붙임 2>

(별지)

에스앤씨엔진그룹리미티드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에스앤씨엔진그룹리미티드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의 사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75조 제1호에 의하여 증권발행제한 3월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에스앤씨엔진그룹리미티드 [前코스닥 상장법인]

- 대표이사 : ☆☆☆
- 홍콩기업청 등록번호 : ○○○○○○○○○
- 본점 소재지 : Units 1607-8, 16th Floor, Citicorp Centre 18 Whitfield Road, Causeway Bay, Hong Kong

□ 조치이유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경과 후 120일 및 6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 회사는 2020년 사업보고서(제출기한 2021. 4. 30.) 및 2021년 1분기보고서(제출기한 2021. 5. 31.)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붙임 1>

관 계 법 규

1.「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9조제2항·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164조(조사 및 조치) ②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증권의 발행,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65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법인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제출의무를 면제하거나 제출기한을 달리하는 등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5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제176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②외국법인등(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보고서를 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고,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법 제160조 전단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3.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별표 3] 증권·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2.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판단기준

가. 동기·결과의 판단요소

【 위법행위 동기 】

(1) 고　　의 :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법행위를 한 경우
(2) 중 과 실 : 당해 행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한 경우
(3) 과　　실 :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

【 법규위반 결과 】

○ 증권·파생상품시장에 미친 영향, 증권·파생상품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법규를 위반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그 경중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한다.

(1) 사회적 물의야기
(2) 중대
(3) 경미

나. 판단기준

동기 / 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
		공시위반	보고의무위반	
사회적물의야기	A	C	D	D
중 대	B	C	D	D
경 미	D	D	D	E

* 공시위반 또는 임원보고의무위반에 한한다.

** 불공정거래의 경우 중과실을 포함한다.

3. 조치기준

판단결과	조치기준	
A	고 발	다만, 공시위반의 경우는 이 기준 5.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C(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원칙적으로 부과하되, 예외적으로 A(고발) 또는 B(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병과
B	수사기관통보	
C	과징금	
D	경 고	
E	주 의	
비고	① 시세조종행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및 부정거래행위로 조치를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및 부정거래행위 간에도 유사한 위법행위로 본다. ② 조치대상이 되는 서로 다른 위법행위가 둘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5.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공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공시의무자에게 다른 조치에 우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치양정기준은 (4)에 따른다.

(1) 공시위반법인이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인이 상장폐지된 경우

(4) 증권발행제한 조치양정 기준(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는 별표 제2호 과징금 부과기준을 준용한다)

위반행위의 중요도 / 감안사유	상	중	하
상향조정사유 발생	12월	9월	6월
해당사항 없음	9월	6월	3월
하향조정사유 발생	6월	3월	1월

< 붙임 2 >

에스앤씨엔진그룹리미티드에 대한 증권발행제한 조치 산정내역

Ⅰ. 산정원칙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별표 제2호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중요도와 감안사유에 따라 별표 제3호에 의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최소 1월에서 최대 12월까지 부과

≪ 증권발행제한 조치 양정기준 ≫

위반행위의 중요도 / 감안사유	상	중	하
상향조정사유 발생	12월	9월	6월
해당사항 없음	9월	6월	**3월**
하향조정사유 발생	6월	3월	1월

Ⅱ. 산정결과

□ **증권발행제한 조치 : 6월**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구 분	중요도	감안사유	기간
① 2020년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하	해당사항 없음	3월
② 2021년 1분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하	해당사항 없음	3월
최종 증권발행제한 기간 : Min{① + ②, 12월} = 6월			

< 의안 소관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본시장조사총괄과 공정시장과	공 시 심 사 국
연 락 처	02-2100-2605 02-2100-2688	02-3145-8470